

2024년 중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중부소방서의 인사·교육, 예산·회계, 물품·장비, 화재·구조·구급, 현장대응, 예방민원 업무처리에 대하여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임.

I 관련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
- 소방감사담당관-834(2024.1.15.)호 「2024년 행정감사 기본계획 알림」
- 소방감사담당관-5895(2024.5.2.)호 「중부소방서 종합감사 계획 알림」

II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024. 6. 19.(수) ~ 7. 2.(화) / 10일간
↳ 【사전감사】 2024. 6. 17. ~ 6. 18.(2일간)
- 감사인원: 감사팀장 등 7명
- 감사범위: 2020년 10월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소방행정 전 분야
- 중점 감사사항
 - 교대근무 복무관리 준수, 적당편의 소극적 업무형태, 감독자의 책임성 강화
 - 인사·교육, 예산·회계, 물품·장비운영 업무처리
 - 화재·구조·구급, 소방용수시설, 교육·훈련, 의용소방대 등 업무처리
 - 건축허가동의, 화재안전조사, 위험물, 방염, 완비증명 등 예방업무 처리실태
 - 소방민원 업무처리에 대한 여론 청취
 - 수범(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발굴 등

Ⅲ 일반 현황

관할여건 중구(행정동 15, 법정동 74개동), 9.96km², 62,156세대, 136,276명

- 서울의 중심부로 경제, 언론, 유통의 중추 기능
- 현재와 과거의 공존(대형호텔, 백화점 등 판매시설, 문화재, 쪽방촌, 전통시장)
- 동대문 패션 관광 특구(도·소매시장, 의류상가 밀집)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 3과, 1단, 4안전센터
- 인력: 286명(소방 274, 기타 12)

소방장비 및 용수시설

- 소방차량 41대(특수차 5, 일반차 31, 이륜차 5)
- 통신장비 857대(유선 429, 무선 428)
- 소방용수 2,821개소
※ 비상소화장치: 217개소(주거밀집98, 시장지역49, 소방차진입불가59, 화재예방강화지구10, 기타1)

특정소방대상물 8,429개소(복합 2,603, 근생 4,353, 공장 49, 의료 4, 창고 17, 숙박 244, 종교 67, 판매 80, 기타 1,012)

- 고층건물(11층이상) 303개소, 중점관리대상 60개소, 다중이용업소 1,812개소
- 위험물시설 164개소, 가스시설 52개소

세입 및 세출 예산 2023년

- 세입징수: 세외수입 금 56백만원
- 세출예산: 금1,277백만원(기본경비 752백만원 / 사업비 525백만원)

소방재난활동 현황 2023년

- 화재 137건 발생 / 인명피해 12명(사망 0, 부상12) / 재산피해 1,152백만원
- 구조 5,104건 327명 구조(1일 평균 13.9건, 0.89명)
- 구급 19,206건 10,021명 이송(1일 평균 55.84건, 22.8명)

IV 감 사 결 과

총괄 요약

- 적출사항: 32건
- 현지조치: 1건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유지·관리 부적정
- 업무개선(권고): 2건
 - 민원업무의 접수·생산·관리 등 개선
 - 구급대 의료용 산소 용기 충전방식 개선
- 수범사례: 2건
 - 진압대원 직장훈련 프로그램(Rightperson) 개발 및 운영
 - 쪽방화재 신속대응을 위한 “한눈에 바로 찾는 스피드 안전맵” 제작
- 적극행정 성과우수직원: 2명 (분야별 성과우수 및 수감자료준비 등)
 - 소방위 임영도, 소방위 정재각
 - 하반기 적극행정 포상후보 선정 및 기관별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가점 부여 권고

주요 적출 사항

- 소방행정(11)
 -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지급업무 소홀
 - 대응단계 비상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업무 소홀
 - 근무지내 국내여비 집행업무 소홀
 - 계약의 담보책임 및 대금지급 증빙자료 확인 소홀
 - 홍보기념품 및 상품권 등 배부업무 소홀
- 재난관리(7)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미실시 대상 사후관리 소홀
 - 특별경계근무 기간중 펌프차량 화재예방순찰 미실시
 - 현장출동 업무 소홀 및 출동수당 부당 수령
 -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업무처리 소홀
 - 소방드론(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영 및 관리 업무 소홀
- 예방행정(13)
 - 소방안전관리대상물(2급 대상물 누락 등) 관리 소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유예 업무처리 부적정
 - 건설현장 안전관리(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소홀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소홀
 -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관련 민원처리 업무 소홀
- 현장대응(1)
 - 화재발생대상 화재조사보고 규정 위반 등 사후조치 소홀

①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부적정

관 련 규 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연도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에서는 복무규정 및 휴가 지침에 따른 복무관리를 다음과 같이 소홀히 함.(총 31명, 환수 봉급 및 연가보상비 등 금 444,000원)

① 사가독서학습휴가 결과물 제출 소홀

○○○, ○○○○○에서는 사가독서학습휴가를 사용 후 과제물을 미제출하거나, 제출기한(10일) 경과 후 제출하였고, 복무담당자는 해당자들의 사가독서 학습휴가를 연가로 전환 조치하지 않고 당해연도 연가보상비를 과지급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총 3명, 환수 연가보상비 금 145,680원 환수)

② 연간 6일 초과 병가 사용자 진단서 미첨부 및 병가의 목적외 사용

○○○○○ 소방○ ○○○은 “몸살감기” 등의 사유로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면서 휴가 신청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감사기간 중 병가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미첨부 병가일의 병원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바 병가기간 중 진료 내역이 없음이 확인되는 등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총 1명, 총 3건, 환수 봉급 등 금 298,320원 환수)

③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증빙서류 미첨부

가족돌봄휴가는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의 학교 행사 또는 병원 진료 동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신청시 사유별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 ○○○○○, ○○·○○○119안전센터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및 학교 행사 참여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서 사전·사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총 15건)

④ 육아시간 사용시 증빙자료 미등록

○○○○○, ○○○○○, ○○·○○○·○○119안전센터에서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때에는 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신청 대상자의 병원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등 기록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고(감사일 현재까지 증빙자료 미등록), 승인대상자는 증빙자료의 확인 없이 육아시간 사용을 승인하였음.(총 12명)

②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지급업무 소홀

■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10장(징계)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지적사항 요약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그런데도 ○○소방서 ○○○○○에서는 2021~2023년 총 7회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해당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함에도 8.8%의 소득세를 일괄 공제 후 지급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총 7회, 22명)

③ 대응단계 비상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업무 소홀

■ 관련 규정

-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제7장 VI. 초과근무수당
-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서울시 소방행정과-40106(2022.11.2.)호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 서울시 소방행정과-32998(2022.08.16.)호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 계획”

■ 지적사항 요약

- 서울시 ○○○○○-40106(2022.11.2.)호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비상소집되는 일근제 근무자의 경우 초과근무 발생시 근무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시간을 인정하고, 비상소집 동원의 경우 발령 시점에서부터 근무지로 귀소 시점까지 인정한다. 단, 발령시부터 응소시(근무지로 응소하지 않고 바로 재난현장으로 응소한 경우는 재난현장 도착시점)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함.

- 그런데도 ○○소방서 ○○○○○에서는 2023. 3. 31.(금) 07:25분경 서울시 ○○ ○○○○ ○○○ ○○○○○ 화재 대응1단계 발령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요원 및 내근 응소자에 대한 비상근무 초과근무 인정처리를 하면서 발령시점부터가 아닌 실제 응소시간으로 처리하여 초과근무수당이 일부 과소지급되게 함.(총 3명, 환급 초과근무수당 금 23,060원)

4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운영업무 소홀

관련 규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교육훈련성적 평정의 기준)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3장(체력검정성적 평정)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규칙 제4조(체력관리계획의 수립)
- 서울시 소방행정과-2922(2023.02.02.)호 “2023년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 기본 계획 알림”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에서는 2023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운영하면서 만 58세 이상 소방공무원, 휴직, 임신·출산 등으로 당해 연도 1차 체력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가 불가능 한 자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후 적격여부를 심의회 대상에 포함하여 진행하였어야 하나, 담당자의 임의 판단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미 실시 인정 처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총 17명)

5 소방공무원증 발급 업무 소홀

관련 규정

- 소방공무원증 규정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 같은 규정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3조(운영실태 등 확인·점검 등)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증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 ① ○○○○○, ○○○○○, ○○○안전센터에서는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으나 즉시 발급권자에게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소방공무원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총 4명)
 - ② ○○○○○에서는 타시도 전입자 또는 승진자 발생시 대상자에게 공무원증 발급용 사진을 제출받아 공무원증을 발급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고, 수시로 소속직원에 대한 소방공무원증 보유현황을 파악하지 않아 종합감사중 확인한 바 승진 후 최대 5년 5개월 동안 당해 계급의 공무원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직원이 확인됨. (총 3명)

⑥ 근무지내 국내여비 집행업무 소홀

관련 규정

- 공무원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 공무원여비 규정 제31조(가산금 징수 등)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 서울시 소방행정과-7707(2021.04.01.)호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재강조”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 ○○○, ○○○○○에서는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 왕복 2km 거리 이내 출장자에게 실비정산 없이 여비 전액을 지급하거나 공용차량 사용자에게 감액 지급하지 않음.(총 17명, 21건, 환수 여비 금 910,000원)

⑦ 계약의 담보책임 및 대금지급 증빙자료 확인 소홀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시행령 제6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2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2조(증거서류 및 장부의 보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에서는 대가지급 증빙서류 미첨부 및 하자보증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함.

① ○○○○○에서는 ○○119안전센터 긴급출동 시스템 설치공사 등 3건의 계약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미첨부하는 등 하자보수 책임 존속기간에 있는 사업에 대한 계약의 담보 책임 업무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었음.

연번	관련부서	관련내용	일자	지적사항	비고
1	○○○○○	○○119안전센터 긴급출동 시스템 설치공사	23.04.17.	하자보수보증서 미첨부	사업비: 금 52,400,370원
2	○○○○○	○○119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	23.05.26.	하자보수보증서 미첨부	사업비: 금 45,120,000원
3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용역	23.07.07.	하자보수보증서 미첨부	사업비: 금 42,170,000원

② ○○○○○에서는 2021년도 ○○소방서 코로나19대비 긴급방역소독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가지급을 위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받고 준공 내역을 확인한 후 안전보건관리비 지출 내역 등 이상없을 때 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서류 첨부 없이 대금을 지급함.

연번	건명	계약일자	계약(낙찰)가격	확인사항	비고
1	2021년도 ○○소방서 코로나 19대비 긴급방역소독	2021.02.25.	금 26,093,000원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 미첨부	
2	○○○119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	2023.06.27.	금 37,268,5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내역 미첨부	

⑧ 홍보 기념품 및 상품권 배부업무 소홀

관 련 규 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50호/2015.9.16.)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에서는 홍보기념품 배부업무 및 기념품 등 상품권 구매대장 관리를 소홀히 함.

① ○○○○○에서는 2021년, 2022년, 2023년 ○○소방서 전방위 홍보기념품 구매계획에 따라 대시민 소방홍보를 위한 기념품을 구매하여 배부하면서 ○○○○○ 퇴직, 근속승진 소방 공무원 축하 등 소방홍보와 맞지않는 내부 직원들에게 기념품을 배부하여 홍보 예산의 목적에 맞지않게 예산 집행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연번	연도별 사용내역	사용일자	사용현황	예산과목	비고
1	2021년 홍보기념품 사용내역	2021.12.31.	○○ ○○○ 퇴직 기념(은수저셋트)	재난의 선제적 예방홍보	
2	2022년 홍보기념품 사용내역	2022.06.23.	승진자 및 퇴직자 기념품(손톱깎이 세트)	재난의 선제적 예방홍보	
		2022.09.29.	○○○○○○ 수상자 축하(손톱깎이 세트)		
3	2023년 홍보기념품 사용내역	2023.05.18.	근속승진공무원 축하(홍보용 배터리)	재난의 선제적 예방홍보	
		2023.06.02.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자 축하 (홍보용 배터리)		

② ○○, ○○119안전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하나, 내방객 및 훈련 시 유관기관 증정을 위해 자체 기념품을 구매하여 민원인들에게 배부하고 물품수불부 대장을 미작성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함.

연번	관련부서	구매일자	구매금액	기념품목	지적사항	비고
1	○○119 안전센터	2022.05.26.	금 165,000원	가정용 분말소화기	물품수불부 대장 미작성	시책 추진비
		2022.12.23.	금 165,000원	가정용 분말소화기		
2	○○119 안전센터	2021.11.24.	금 330,000원	가정용 분말소화기	물품수불부 대장 미작성	시책 추진비

③ ○○○○○에서는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계획에 따라 상품권 구매 시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에 구매내역을 기록하고 배부시에는 중간 수령인의 서명을 받고 배부하여야 하며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하나 수령인 서명용만 비치하였고,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연간 사용내역 공개자료와 상품권 배부대장과 금액 및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현지조치 완료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기록·비치 / 6월부터 시행)

9 소방장비 기록관리 및 차고문 종합점검 업무 소홀

관련 규정

- 소방장비관리법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기록관리)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2조(장부의 비치)
- 소방장비관리 업무관련 기록관리 철저(본부 안전지원과-6395호/2021.04.05.)
- 소방청사 차고문 안전관리 종합대책(본부 소방행정과-22902호/2020.09.08.)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에서는 소방장비 기록관리 및 차고문 종합점검 업무를 소홀히 함.

① ○○○○○에서는 2022년 ○○소방서 차고문 안전관리 계획 알림(○○○○○-272호/2022.01.10.) 자체 계획을 수립 후, 2022년 상·하반기, 2023년 상반기 정기점검을 누락하는 등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발생 및 차고문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연도	소방관서 차고문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상반기 점검	하반기 점검 (외부업체)	비고
2022년	자체계획 수립	×	×	
2023년		×	○	
2024년		○	-	

② ○○○, ○○119안전센터에서는 근무교대 점검 시 소방장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확인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점검결과와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관리자용 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하지만, 고장발생 이후 수리완료일까지 점검결과 미입력 등 소방장비를 부적정하게 관리함.

연번	부서	장비명	고장일자	시스템입력	비고
1	○○○119안전센터	소방차량(○○○)	2022.06.21.	고장(점검) 결과 미입력	
			2022.08.10.		
			2022.09.15.		
			2022.10.27.		
2	○○119안전센터	저온 플라즈마 멸균소독기	2021.01.25.	고장(점검) 결과 미입력	
			2021.02.02.		
			2021.03.05.		

10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지출 업무 부적정

관 련 규 정

-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 연도별 성과주의 예산서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에서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지출 업무를 소홀히 함.
- ① ○○○○○, ○○○○○, ○○○, ○○○, ○○, ○○119안전센터에서는 세출예산 편성내역 집행기준 및 연도별 소방재난본부의 성과주의 예산서에 따라 간담회 및 음료, 다과 및 내방인을 위한 기념품 등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공공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책정되어 있는 차고 온풍기용 등유 구입, 차량 고장수리, 차고문 수리 등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로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함.

연번	부서명	집행 일자	제목	사용항목	비고
1	○○○○○	2020-12-04	○○○ 차고 온풍기용 등유 구매	사무관리비	
2	○○○○○	2021-02-23	구급대체인력 면접시험 음료 및 다과 구매	사무관리비	
3	○○○119안전센터	2021-07-08	구급차량 고장수리	사무관리비	
4	○○119안전센터	2021-07-15	구급차량 고장수리	사무관리비	
5	○○○○○	2021-07-30	○○○○○차고문 수리비용 지급	사무관리비	
6	○○○○○	2021-11-23	○○○○○ 차고지 온풍기용 등유 구매	사무관리비	
7	○○119안전센터	2022-11-28	2022년 하반기 ○○119안전센터 기념품 구매	사무관리비	
8	○○○○○	2024-01-23	○○○○○ 차고 난방용 등유 구매	사무관리비	
9	○○○○○	2024-02-13	○○○○○ 차고 난방용 등유 구매	사무관리비	
10	○○○119안전센터	2024-03-08	소방차량(구급차)수리비용 지급계획	사무관리비	

② ○○○○○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누락하는 등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예산 집행의 신빙성을 훼손하였음.

부서명	간담회일자	간담회 내용	지급항목	지적사항	비고
○○○○○	2023.04.05. (18:00~21:00)	2023년 4월중 3팀 간담회 실시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참석자명단 누락	
	2023.08.29. (09:30~12:30)	2023년 8월중 2팀 간담회 실시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참석자 명단 및 e-호조 서류 미첨부	
	2023.11.22. (09:30~12:30)	2023년 11월중 3팀 간담회 실시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참석자명단 누락	
	2024.05.29. (18:00~21:00)	2024년 5월중 2팀 간담회 실시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참석자명단 누락	

③ ○○○○○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상근직원 경·조사 시 상급부서인 ○○소방서 명의로 경·조사가 지급됨에도 하급 부서인 ○○○○○ 명의로 중복하여 1건당 10만원의 축의·부의금품을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을 소홀히 함.

부서명	지급일자	대상	지적사항	지급항목	비고
○○○○○	2021.06.26.	○○○(본인결혼)	○○○○○와 중복지급 (금 100,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 출납사무의 인수인계 및 신용카드 사용·관리 소홀

관련 규정

-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출납사무의 인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2조(증거서류 및 장부의 보존)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에서는 출납원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등 신용카드 사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① ○○○○○에서는 인사이동 등으로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인계보고서, 인감신고서 및 출납원변경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공문으로 보고하여 증거서류를 관리하여야 하나 누락 하였음.

관련부서	인사이동	지적사항	비고
○○○○○	2024.01.08. (일상경비출납원 변경부서 업무처리 알림)	인사이동에 따른 일상경비 출납원 변경 및 인수인계 증빙서류 등 보고 누락	

② ○○○○○에서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출납원 변경 및 출납사무 담당자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구매키드 발급대장에 담당자 및 비밀번호 변경 등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출납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함에도 누락하였고 ○○○에서는 매월 1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임제 무관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하나 누락하였으며, 또한 ○○, ○○119안전센터는 규정에 맞지 않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비치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 및 보관·관리를 소홀히 함.

연번	부서명	신용카드 관리대장 비치여부	지적사항	비고
1	○○○○○	○	2021.1.11. 일상경비출납원 변경시 신용카드 관리대장 상 변경사항 누락	
2	○○○	○	2024.1.~현재까지(5개월)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고 누락	
3	○○119안전센터	정규 서식에 맞지 않는 양식 사용	지방자치단체구매키드 발급대장 누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	
4	○○119안전센터	정규 서식에 맞지 않는 양식 사용	지방자치단체구매키드 발급대장 누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	

재난관리분야

6건

①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미실시 대상 사후관리 소홀

관 련 규 정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소방훈련·교육)
- 2024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편 제2항(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지적사항 요약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에 따라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소방훈련·교육), 2024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 행정편 제2항(소방 훈련 지원센터 운영)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방서의 최근 4년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계획에 의하면 현장대응단 및 안전 센터에서는 연 1회 이상 관할구역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무자의 실제 대피훈련 및 출동경로, 소방차량 부서위치 선정 등을 위한 합동훈련을 ○○○개소 실시하였다.
- ○○소방서는 관내 공공기관에 실질적 합동훈련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 공한문을 감사 대상 기간(○년)중 ○회 연초에 발송 하는 등 내실있는 공공기관 합동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 음에도, 최근 4년간 훈련실시 결과는 총 훈련대상 ○○○개소 중 훈련실시 ○○○(○○%)개 소, 훈련 미실시 ○○○(○○%)개소로 훈련 참여율이 낮은 등 내실있는 훈련실시에 어려 움이 있고, 2023년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대상은 ○○개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상급기관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소방서는 연도별 훈련 미참여 기관중 2023년 미 실시 대상 ○○개소에 대하여 소방훈련· 교육 미실시(공공기관) 상급기관 또는 복무부서에 위반사실 등을 통보하여 향후 훈련 미 실시를 방지하고 훈련의 법적 근거, 훈련목적, 훈련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미 통보 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함.

② 특별경계근무 기간중 펌프차량 화재예방순찰 미실시

■ 관련 규정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동원인력, 소방청 훈령 제313호』
- 재난대응과-1293(2023.01.13.)호 『2023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23181(2023.09.11.)호 『2023년 추석연휴 대비 특별경계근무 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31333호(2023.12.12.)호 『2023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알림』

지적사항 요약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동원인력, 소방청 훈령 제313호) 2023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계획 알림(재난대응과-1293호, 2023.01.13.), 2023년 추석연휴 대비 특별경계근무 계획 알림(재난대응과-23181호, 2023.09.11.), 2023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알림(재난대응과-31333호, 2023.12.12.), 등에 의하면 설 연휴, 추석연휴,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수 있도록 (예방)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대비)재난 대비 소방 대응능력 강화, (대응)상황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 활동 체계를 구축 할수 있도록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① 설 연휴 특별경계 근무 기간중 관내 중점관리대상 등 취약대상 펌프차량 등 예방순찰을 1일 2회(주간1,야간1) 실시하여야 함에도 예방순찰을 ◎◎회 미실시 함.
- ② 추석연휴 특별경계근무 기간중 관내 중점관리대상 등 취약대상 펌프차량 등 예방순찰을 1일 2회(주간1,야간1) 실시하여야 함에도 예방순찰을 ◎◎회 미실시 함.
- ③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 근무 기간중 관내 중점관리 대상 등 취약대상 펌프차량 등 예방순찰을 1일 2회(주간1,야간1) 실시 하여야 함에도 예방순찰을 ◎회 미실시 함.

③ 소방용수시설 등 조사결과 보고 소홀

관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소방용수·지리조사 결과조치)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 재난대응과-1124.(2024.01.02.)호 『2024년 소방용수시설·출동로 기본 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4005.(2024.02.15.호) 『2024년 해빙기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조사·정비 계획 알림』

지적사항 요약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 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제13조(소방용수·지리조사 결과조치),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2024년 소방용수시설·출동로 기본 계획 알림(재난대응과-1124, 2024.01.12.) 등에 의하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연 2회(해빙기, 동절기) 소방용수시설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 및 비상소화장치 훈련결과, 소방용수시설 이설 현황 등을 119행정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고하고 현행화 하여야 하며,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 부서에 통보 하여 사후 조치를 취하는 등 소방관서에서는 관할구역 내 소방용수시설(비상 소화장치 포함)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① ○○○센터 소방○ ○○○ 등 연 인원 ○○○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일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를 조사한 후에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하고, 고장발생 대상에 대하여는 고장발생 보고 등 사후조치 관련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소화전 제○○○○호 등 ○○○개 대상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를 누락 함.
- ② ○○○센터 소방○ ○○○ 등 연 인원 ○○○명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비상소화장치 조사를 실시하면서 제○○호 등 ○○○개 대상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를 누락 함.

4 현장출동(화재·구조·구급) 업무 소홀 및 출동수당 부당 수령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출동대비)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서울시 소방행정과-2491(2019.1.28.)호 “출동가산금 지급기준 재알림”
- 서울시 소방행정과-23465(2019.9.3.)호 “출동간식비 집행기준 개선 알림”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에서는 현장출동(화재·구조·구급 등)수보를 받고 출동 중 귀소하거나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출동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출동 건들에 대하여 근무일지 상 시스템에 반영하여 수당을 반복·지속적으로 부당 수령하는 등 현장출동 및 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함.

【 현장출동 부적정 및 수당 지급 내역 - 총 37건, 34명 / 금 455,000원 】

- ① 화재출동 부적정 내역 <총 6건, 14명 / 환수: 출동가산금(간식비), 금 161,000원>
- ② 구조출동 부적정 내역 <총 6건, 12명 / 환수: 출동가산금, 금 99,000원>
- ③ 구급출동 부적정 내역 <총 25건, 15명 / 환수: 출동가산금, 금 195,000원>

⑤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업무처리 소홀

관련 규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등)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5조(특별교육훈련의 방법)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실태점검)
- 연간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에서는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등 계획 수립단계에서 현장 활동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안전점검부서에 ‘안전영향평가’ 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점검·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총 9건)

⑥ 소방드론(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영 및 관리 업무 소홀

관련 규정

- 항공안전법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3조(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20조(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21조(기록관리)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22조(고장 등의 발생보고)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24조(실적보고)
- 소방장비관리규칙 18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 서울시 재난대응과 연도별 소방드론 관리·운용 계획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방드론 점검 및 기록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
 - ① 소방드론 운용 부서로서 정기점검을 통하여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고, 점검 결과를 주간점검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다수 누락하였고, 매월 드론 활용실적 및 교육훈련 내역을 운용일지에 작성하여 재난관리과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누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총 15건)
 - ② 소방드론 고장발생 시 즉시 고장발생보고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상당기간 지체하여 처리하였으며, 주간점검일지 및 소방드론 관리대장에 고장발생내역·수리내역을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미작성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총 2건)

예방행정분야

10건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2급 대상물 누락 등) 관리 소홀

관련 규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일반대상물로 관리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분류를 부적법하게 처리함.

①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일반대상물로 관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자체 점검을 미실시함.

연번	대상물명	소재지	건축규모	지적사항
1	○○○○○○ ○○통신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0층, 길이 296m 용도: 지하구(통신구) 사용승인: 1969.12.30.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일반대상물로 관리

②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하여 관리함.

연번	대상물명	소재지	건축규모	지적사항
1	○○○○○○ ○○유보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4층/지상20층, 8개동, 연면적 129,145.90㎡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등) 사용승인: 2019.6.7.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관리
2	○○ 2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706.49㎡ 용도: 복합건축물(업무시설, 터널) 사용승인: 2019.6.7. 	
3	○○빌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10층, 연면적 3,892.52㎡ 용도: 복합건축물(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 1969.8.26. 	
4	호텔○○○○○ ○○1호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10층, 연면적 6,972.81㎡ 용도: 복합건축물(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사용승인: 1970.1.24. 	

③ ○○소방서 관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관리함.

연번	대상물명	소재지	건축규모	지적사항
1	○○4○○ 통신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0층, 길이 1,300m 용도: 지하구(통신구) 사용승인: 1985.10.5. 	- ○○소방서 관할 지하구를 ○○소방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관리

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유예 업무처리 부적정

관 련 규 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26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6조
- 소방안전관리자 지도감독 업무처리 가이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및 선임유예 기간 만료대상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미선임 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①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미선임함.

연번	특정소방대상물	지적사항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명: ○○빌딩 • 대상물 구분: 3급대상물 • 용도: 근린생활시설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일: 2022.6.3. 	- 해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명: ○○○○○○○센터 • 대상물 구분: 2급대상물 • 용도: 문화및집회시설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일: 2019.8.16. 	- 해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명: ○○빌딩 • 대상물 구분: 3급대상물 • 용도: 근린생활시설 • 사용승인일: 1969.5.30.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유예 기간만료 대상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함.

연번	특정소방대상물	지적사항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명: ○○빌딩 • 대상물 구분: 1급대상물 • 용도: 업무시설 • 선임유예 기간: 2022.2.8. ~ 2022.6.30. 	- 선임유예 기간만료 후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연번	특정소방대상물	지적사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명: ○○빌딩 대상물 구분: 3급대상물 용도: 업무시설 선임유예 기간: 2022.7.22. ~ 2023.7.21. 	- 선임유예 기간만료 후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명: 학교법인 ○○○○○○(구.○○○○○○○) 대상물 구분: 3급대상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선임유예 기간: 2022.6.8. ~ 2023.6.7. 	- 선임유예 기간만료 후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명: ○○빌딩(○○○○○○○주차장) 대상물 구분: 1급대상물 용도: 업무시설 선임유예 기간: 2022.7.28. ~ 2023.7.31. 	- 선임유예 기간만료 후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명: ○○○&○ (구. ○○빌딩) 대상물 구분: 2급대상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선임유예 기간: 2022.7.28. ~ 2023.7.31. 	

③ 건설현장 안전관리(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소홀

■ 관련 규정

- 연도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 2023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및 2024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 관리 계획

■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에서는 건축공사장 관리카드 신규 작성 및 분기마다 현행화를 하지 않는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

연번	특정소방대상물	지적사항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현장: ○○1○ ○-○외 ○필지 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2층/지상17층, 연면적 6,032.29㎡ 용도: 업무시설 (착공신고일: 2023.10.27.) 소재지: ○○1○ ○-○외 ○필지 	- 건축공사장 관리카드를 미등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현장: ○○ ○○-○○ 건물 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4,806.46㎡ 용도: 복합건축물 (착공신고일: 2022.2.9.) 소재지: ○○ ○○-○○ 	- 2022.2.9. 관리카드 최초 작성 이후 현행화 미실시

연번	특정소방대상물	지적사항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 ○○○-○○ 건물 • 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5층/지상16층, 연면적 38,860.46㎡ • 용도: 복합건축물 (착공신고일: 2023.2.7.) • 소재지: ○○ ○○○-○○ 	- 2023.2.8. 관리카드 최초 작성 이후 현행화 미실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2○ ○○-○ • 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6층/지상19층, 연면적 15,627.77㎡ • 용도: 복합건축물 (착공신고일: 2022.2.18.) • 소재지: ○○ ○○○2○ ○○-○ 	- 2023.11.2. 관리카드 최초 작성 이후 현행화 미실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2○ ○○-○ • 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3층/지상15층, 연면적 10,428.96㎡ • 용도: 복합건축물 (착공신고일: 2023.10.27.) • 소재지: ○○ ○○○2○ ○○-○ 	- 2023.11.2. 관리카드 최초 작성 이후 현행화 미실시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3○○○ ○○지구 ○○○○○ ○○○사업 • 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6층/지상17층, 연면적 60,392.62㎡ • 용도: 복합건축물 (착공신고일: 2023.11.28.) • 소재지: ○○ ○○○ ○○-○○ 일대 	- 2023.12.11. 관리카드 최초 작성 이후 현행화 미실시

4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 소홀

관련 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11조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에서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법정 소방시설인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가 누락되거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부적법 함에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를 회신함.

연번	건축주	소재지	건축규모	지적사항
			건축허가등의 구분	
1	(사)○○ ○○○○	○○○ ○○○ 외 ○○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3층/지상12층 • 연면적: 4,495.87㎡ • 용도: 복합건축물(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비상경보설비 → 휴대용 확성기 설계) - 지상11층 및 12층의 피난구 유도등 부적정 (소형 설계)
			• 건축허가 동의: 2024.1.22.	

2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0층/지상9층 연면적: 489.79㎡ 용도: 근린생활시설 	- (변경허가) 건축허가 동의 시 자동 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허가) 건축허가 동의: 2022.8.22. (변경허가) 건축허가 동의: 2023.3.10. 착공신고: 2023.10.27. 사용승인 동의: 2024.4.22. 		
3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2,614.85㎡ 용도: 복합건축물(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허가) 비상방송설비 누락 - (1차 설계변경) 비상방송설비 누락 - (2차 설계변경) 비상방송설비 누락 - (착공신고) 비상방송설비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허가) 건축허가 동의: 2022.6.23. (1차 설계변경) 건축허가 동의: 2023.4.11. (2차 설계변경) 건축허가 동의: 2023.10.25. (최초) 착공신고: 2024.1.11. (정정) 건축허가 동의: 2024.5.13. ※ 종합감사 수감자료 준비기간 시정조치 (변경) 착공신고: 2024.5.24. 		

5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소홀

관 련 규 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지적사항 요약

- 공사업자가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부적법하게 시공함에도 감리업자는 소방 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기술 지도를 하지 않았고 또한 ○○소방서 ○○○에서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가 부적법 함에도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함.

건축주	소재지	건축규모	지적사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3,346.13㎡ 용도: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소방공사 감리업자: ○○○○○(대표자 ○○○○) 소방시설 공사업자: ㈜○○○○(대표자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호(2021.3.8.) 	- 지하2층 기계식 주차장 수평 순환구 간 스프링클러헤드 미설치

6 소방기술자 배치 부적정

관련 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2조 및 제40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1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에서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기준보다 낮은 소방기술자가 배치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보완없이 수리함.

특정소방 대상물	소재지	건축규모	지적사항						
○○ ○-○-○○ 복합시설	○○○4○ ○○ 외 ○○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인: ○○○○○○○(주) 외 ○인 • 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4층/지상15층 • 연면적: 5,730.57㎡ • 용도: 복합건축물(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 중급 소방기술자 시공기간: 2020.1.9.~2020.5.27. ※ 상호/대표자 변경: <u>주○○○○○○○/○○○</u> 	- 지하층을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의 현장으로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나 기준보다 낮은 중급 기술자 배치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성명</th> <th>공사업체</th> <th>기술자 등급</th> </tr> </thead> <tbody> <tr> <td>○○○</td> <td>주○○○○○</td> <td>중급</td> </tr> </tbody> </table>	성명	공사업체	기술자 등급	○○○	주○○○○○	중급
성명	공사업체	기술자 등급							
○○○	주○○○○○	중급							

7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계획 업무 소홀

관련 규정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계획 알림(본부 예방과)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과에서는 2021년 및 2022년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자체 집행계획 없이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다중이용업소 위험도별 등급 재분류 실시하지 않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 총 ○○○개소(2021년도 ○○개소, 2022년도 ○○개소, 2023년도 ○○○개소)를 누락하는 등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추진을 소홀히 함.

연도	본부 집행계획	자체 집행계획	위험도별 재분류
2021	○○○-3395(2021.02.09.)호	자체 추진계획 미수립	자체 계획 미수립 - 등급분류 ○○개소 미입력
2022	○○○-2994(2022.02.08.)호	자체 추진계획 미수립	자체 계획 미수립 - 등급분류 ○○개소 미입력
2023	○○○-2549(2023.02.03.)호	자체 추진계획 수립 (2023.03.06.)	자체 계획 수립(2023.03.22.) - 등급분류 ○○개소 미입력

8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소홀

관 련 규 정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같은 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1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과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46개소(2020년 10월 29건, 2021년 67건, 2022년 7건, 2023년 130건, 2024년 6월까지 63건)에 대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접수대상에 대하여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확인 시 안전시설 등 설치 적정 여부 등 완비증명서 설계도면의 보완요구 사항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이 업무 처리함.

연번	대상 (영업의종류)	소재지	완비증명서 (발급일)	영업장 현황	지적내용
1	○○○○ (일반음식점)	○○○○	제2023-○호 (2023.○.○.)	11/3층 8,844.64㎡ 중 지상 2층 151.46㎡	- 도면에 작성되어 있는 비상구 전실 나가는 문 규격이 (세로 1.50m 이상)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현장 발급시에도 규격(세로 1.47m 이하) 부족 하였으나 발급함
2	○○○○ (일반음식점)	○○○○	제2021-○호 (2021.○.○.)	4/1층 1,937.24㎡ 중 지상 1~3층 966.96㎡	- 3층 발코니 비상구 추락방지 스티커 및 경보발생장치 누락
3	○○○○ (휴게음식점)	○○○○	제2022-○호 (2022.○.○.)	4/3층 82,461.1㎡ 중 지하 2층 328.30㎡	- 도면 SP배관구경 표기 누락

4	○○○○○ (휴게음식점)	○○○○○	제2023-○호 (2023.○.○.)	34/7층 122,586.8㎡ 중 지상 2층 199.34㎡	- 도면 SP배관구경 표기 누락
5	○○○○○ (일반음식점)	○○○○○	제2022-○호 (2022.○.○.)	2/0층 147.1㎡ 중 지상 1~2층 147.1㎡	- 비상구 전실 나가는 문 추락 방지스티커 및 경보발생장치 누락
6	○○○○○ (일반음식점)	○○○○○	제2023-○호 (2023.○.○.)	2/0층 271.08㎡ 중 지상 2층 135.54㎡	- 비상구 전실 입구 추락방지 스티커, 경보발생장치 도면 표기 및 완비증명서 발급시 누락
7	○○○○○ (일반음식점)	○○○○○	제2023-○호 (2023.○.○.)	8/1층 874.31㎡ 중 지상 2~4층 313.29㎡	- 비상구 전실 입구 추락방지 스티커, 경보발생장치 도면 표기 및 완비증명서 발급시 누락
8	○○○○○ (휴게음식점)	○○○○○	제2023-○호 (2023.○.○.)	2/1층 349.94㎡ 중 지상 1~2층 349.94㎡	- 비상구 추락방지스티커 및 경보발생장치 도면 누락 및 완비증명서 발급시 누락
9	○○○○○ (휴게음식점)	○○○○○	제2023-○호 (2023.○.○.)	9/1층 2,293.76㎡ 중 지상 1~3층 640.87㎡	- 비상구 전실 추락방지스티커 도면 표기 누락(스티커 3개, 경보발생장치 3개 부족)
10	○○○○○ (휴게음식점)	○○○○○	제2023-○호 (2023.○.○.)	8/2층 2,002.64㎡ 중 지상 2~3층 442.20㎡	- 비상구 전실 추락방지스티커 도면 표기 누락
11	○○○○○ (휴게음식점)	○○○○○	제2023-○호 (2023.○.○.)	11/6층 23,306.38㎡ 중 지상 1~2층 167.97㎡	- 비상구 전실 추락방지스티커 도면 표기 누락
12	○○○○○ (일반음식점)	○○○○○	제2023-○호 (2023.○.○.)	4/1층 954.76㎡ 중 지상 2층 219.6㎡	- 비상구 전실 추락방지스티커, 경보발생장치 도면 표기(수량) 누락

9]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리 소홀

관 련 규 정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1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과에서는 허가관청 및 보험회사를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해지(보험 계약유지) 현황을 확인(전산시스템)하지 않아 다중이용업소업주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이 해제·해지가 되는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함.

연번	대상	소재지	완비증명서 (발급일)	영업장 현황	지적내용
1	○○○○ (일반음식점)	○○○○	제2022-○호 (2022.○.○.)	10/5층 15,755㎡ 중 지하 1층 99㎡	- 보험만기일(2024.03.31.)이 지난 다중이용업소가 ○○일 경과 후 화재배상책임 보험을 갱신함. (2024.○.○.)
2	○○○○ (일반음식점)	○○○○	제2020-○호 (2020.○.○.)	4/1층 1,025.10㎡ 중 지상 2층 205.02㎡	- 보험만기일(2023.07.06.)이 지난 다중이용업소가 ○○일 경과 후 화재배상책임 보험을 갱신함. (2024.○.○.)

10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 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방염성능검사신청) 및 제5조(방염성능 검사 합격표시 등)
-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 제7조의 2(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6. 완비증명·방염후처리 업무)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과에서는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부적정 교부, 방염처리 시공사진 부적정, 시료채취 사진 부적정, 변경(2022.06.07.)된 표준 시공명세서 미확인 등 서류검토를 소홀히 함.

연번	발급번호	대상명	소재지	교부일	지적 내용
1	2021-○○	○○○○ (11층이상 고층건축물)	○○○○	2021.○.○.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제출시 시료채취 사진(하부장)과 시공내역서(상부장)가 상이함에도 접수 처리함.
2	2021-○○	○○○○ (11층이상 고층건축물)	○○○○	2021.○.○.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제출시 시료채취 사진(선반)과 시공내역서(벽체)가 상이함에도 접수 처리함.

연번	발급번호	대상명	소재지	교부일	지적 내용
3	2021-○○	○○○○ (다중이용업소)	○○○○	2021.○.○.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제출시 첨부된 시료채취 사진의벽체(3면)와 시공내역서(2면)의 방염면적이 상이함에도 접수 처리함.
4	2022-○○	○○○○ (11층이상 고층건축물)	○○○○	2022.○.○.	-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제출시 현장 방염처리물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2022.06.07.)에 따라 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해야하나 보완요구 사항 없이 접수 처리함.
5	2022-○○	○○○○ (업무시설)	○○○○	2022.○.○.	-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제출시 현장 방염처리물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2022.06.07.)에 따라 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해야하나 보완요구 사항 없이 접수 처리함.
6	2023-○○	○○○○ (11층이상 고층건축물)	○○○○	2023.○.○.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제출시 11층이상 고층건축물의 방염대상이 아닌 물품(구획실 목재문)을 접수 처리함.
7	2023-○○	○○○○ (문화 및 집회시설-야외)	○○○○	2023.○.○.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제출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야외 행사무대에 설치된 무대부로 방염성능 대상이 아닌 물품을 접수 처리함.
8	2023-○○	○○○○ (문화 및 집회시설-야외)	○○○○	2023.○.○.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제출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야외 행사무대에 설치된 무대부로 방염성능 대상이 아닌 물품을 접수 처리함.
9	2023-○○	○○○○ (다중이용업소)	○○○○	2023.○.○.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제출시 시료채취 표시가 누락되었으며, 시공내역서와도 상이함에도 접수 처리함.
10	2023-○○	○○○○ (다중이용업소)	○○○○	2023.○.○.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제출시 시료채취 표시가 누락되었으며, 시공내역서와도 상이함에도 접수 처리함.
11	2023-○○	○○○○ (업무시설)	○○○○	2023.○.○.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제출시 업무시설 방염대상이 아닌 물품(복층 마루바닥)을 접수 처리함. -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증에 방염처리업자 미기입 발부함.
12	2023-○○	○○○○ (다중이용업소)	○○○○	2023.○.○.	-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제출시 현장 방염처리물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2022.06.07.)에 따라 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해야하나 보완요구 사항 없이 접수 처리함. -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증에 방염처리업자 미기입 발부함.
13	2023-○○	○○○○ (11층이상 고층건축물)	○○○○	2023.○.○.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제출시 11층이상 고층건축물의 방염대상이 아닌 물품(구획실 목재문)을 접수 처리함.
14	2024-○○	○○○○ (문화 및 집회시설-야외)	○○○○	2024.○.○.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제출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야외 행사무대에 설치된 무대부로 방염성능 대상이 아닌 물품을 접수 처리함.

11 자체점검 유예신청 민원처리 소홀

관련 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 본부 예방과-10932(2016.04. 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 지침 알림”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과에서는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에 대해 승인 결정 지연 통보하는 등 자체점검 유예신청 민원업무 처리를 소홀히 함.

연번	구분	대상명	소재지	신청일 (사업소접수)	유예결과 통지일	유예기간	승인 여부	지적사항
1	종합	○○○○	○○○○	2023.09.25.	2023.10.05.	2023.9.30.~ 2024.01.30.	승인	유예신청 결과 지연 통지(5일)
2	종합	○○○○	○○○○	2022.12.07.	2022.12.16.	2023.01.01.~ 2023.06.30.	승인	유예신청 결과 지연 통지(7일)
3	종합	○○○○	○○○○	2022.12.02.	2022.12.13.	2022.12.02.~ 2023.12.01	승인	유예신청 결과 지연 통지(7일)
4	종합	○○○○	○○○○	2022.11.08.	2022.12.01.	2022.11.08.~ 2023.11.07.	승인	유예신청 결과 지연 통지(17일)
5	종합	○○○○	○○○○	2022.10.19.	2022.11.01.	2022.10.12.~ 2023.10.11.	승인	유예신청 결과 지연 통지(9일)
6	종합	○○○○	○○○○	2022.10.20.	2022.10.28.	2022.03.31.~ 2023.01.31.	승인	유예신청 결과 지연 통지(6일)
7	종합	○○○○	○○○○	2022.10.06.	2022.10.17.	2022.10.05.~ 2023.10.04.	승인	유예신청 결과 지연 통지(6일)
8	종합	○○○○	○○○○	2022.10.06.	2022.10.18.	2022.10.06.~ 2023.01.31.	승인	유예신청 결과 지연 통지(7일)
9	종합	○○○○	○○○○	2022.08.30.	2022.10.12.	2023.01.01.~ 2023.12.31.	승인	유예신청 결과 지연 통지(27일)
10	작동	○○○○	○○○○	2022.03.08.	2022.03.16.	2022.03.02.~ 2023.03.01.	승인	유예신청 결과 지연 통지(6일)

12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관련 민원처리 업무 소홀

관련 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지위승계의 신고)
-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5조(지위승계)

지적사항 요약

- ○○소방서 ○○○○과에서는 ○구 ○○○○ ○○○○ 소재 ○○○○주유소 등 4개소에 대해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업무처리를 하면서 지위승계일 부적정, 증명서류 미검토, 구,완공검사필증 교부 등 지위승계 민원처리 업무를 소홀히 함.

연번	구분	대상(설치자)	소재지	교부일자	지적내용
1	주유 취급소	○○주유소 (○○○○)	○○○○○	2021.○.○.	- 지위승계의 기준일(2021.10.20.)이 경과 되지 않았는데 지위승계서를 접수 받 아(2021.10.19.) 처리함 -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처리시 기존 양식 사용
2	옥내탱크 저장소	○○○○타워 (○○○○)	○○○○○	2022.○.○.	-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2019.8.19.)만 받은 대상으로 설치허가에 대한 지위 승계의 절차가 필요 없음에도 접수 를 받아 정상 처리함 (관련 증빙서류 및 법인도장 누락)
3	옥내탱크 저장소	○○○○타워 (○○○○)	○○○○○	2022.○.○.	- 지위승계의 기준일(2022.01.19.)이 경과 되지 않았는데 지위승계서를 접수 받 아(2022.01.18.) 처리함 - 건물 매매에 따른 양도를 증명하는 서 류 등 확인하지 않고 처리함. -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처리시 기존 양식 사용
4	옥내탱크 저장소	○○○○빌딩 (○○○○)	○○○○○	2024.○.○.	- 건물 매매에 따른 양도를 증명하는 서 류 등 확인하지 않고 처리함.

현장대응분야

1건

① 화재발생대상 화재조사보고 규정 위반 등 사후조치 소홀

관련 규정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 보고)
- 2019년~2024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현장대응행정편 제17항 「화재·안전사고 조사 전문화 및 통계관리」

지적사항 요약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는 화재 인지로 부터 30일 이내(정확한 조사기간 필요시 50일 이내), 긴급상황 보고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일반화재는 화재 인지로부터 15일 이내에 화재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규정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시 감정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함.

- ① 2020. 10. 27. ○○ ○○소재 건물 등 ○○건의 화재발생 대상에 대하여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화재조사 결과보고 기한인 15일을 초과하여 보고하는 등 화재조사 결과 보고와 관련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 ② 2021.02.14. ○○ ○○-○ 소재 등 화재가 발생한 ○개소의 소방안전관리대상 등 중점관리대상에서 화재발생시 5일 이내에 소방서 전부서에 전파하여 각 부서별 화재발생대상 행정지도 등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통보 하여야 함에도 미통보하는 등 중점관리대상 등 화재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현지조치 지적사항

1건

1	<p>○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유지·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과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의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 ○○구 ○○○○ ○○ 소재 ○○○○○○(일반음식점, 3/0층, 807.03㎡ 중 지상 2층 250.41㎡)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영업장 내(화물용승강기 위치) 벽면 마감재료(석고보드) 탈락으로 부적정 관리됨. - ○○구 ○○○○ 소재 더 ○○○○(일반음식점, 7/2층, 2,326.73㎡ 중 지상 2층, 330.35㎡)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피난안내도 수량 부족, 옥내소화전 내부 관찰 누락, 4호실 앞 창고 내부 실내장식물 목재로 사용하여 부적정 관리됨. <p>【 현지조치 요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부적합 대상은 과태료처분, 조치명령 등 적정하게 조치하고, 관련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기 바람.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시 적합하게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바람.
---	---

V

개선(권고) 사항

1 구급대 의료용 산소용기 충전 방식 개선 통보

□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0조(출동대비)

□ 추진배경 및 현 실태(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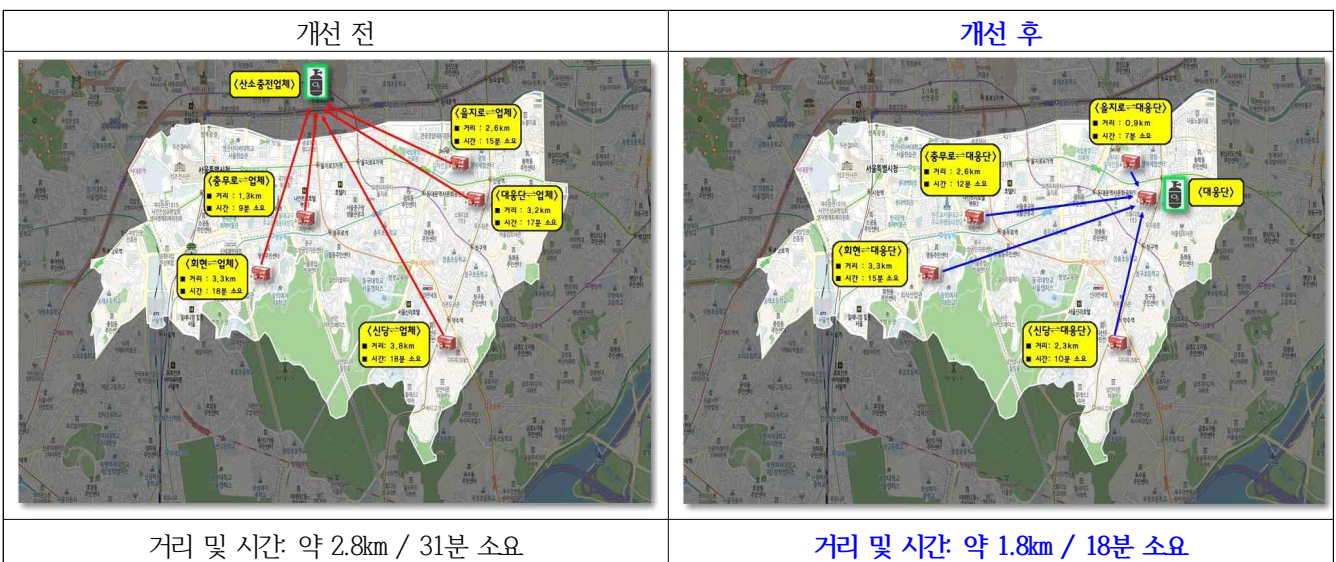
- 의료용 산소용기 충전을 위해 원거리 업체로 이동하여 충전업무 실시
- 각 출동부서에서 업체 간 거리가 약 2.8km에 달하고, 왕복 시간이 약 31분 가량 소요됨에 따른 관내 출동공백 발생(각 부서별 평균수치)
- 비효율적인 충전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과 접근성 향상 필요

□ 개선내용

- 기존 모든 구급대가 직접 업체를 방문·충전하는 방식에서 업체가 산소용기를 직접 배달·수거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기대효과

- 현장대응단에서 산소 용기 교체·반납을 통해 단순 충전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여 관내 출동공백을 최소화



- 차량 주유 및 기타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2 민원업무의 접수·생산·관리 등 개선 통보

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민원의 처리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추진배경 및 현 실태(문제점)

- 시설지도, 방염, 완비 및 자체점검 등 각 예방분야에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관행을 답습하며 업무담당자가 민원서류를 전결 처리함.
-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은 담당자 전결사항이나 인·허가 등 민원사항과 행정처분의 경우 팀장 또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과 중부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함.
- 또한,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처리기간에 민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일부 결락함.

개선내용

- 사무전결처리 규정에 따라 민원 접수 시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고, 민원을 처리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토록 개선함.
- 민원서류를 전자적 형태(비전자문서 등록)로 접수·생산 및 관리토록 개선 요구함.

기대효과

-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수 및 민원서류의 검색·활용 등 필요한 업무처리 시 업무능률 향상이 기대됨.

VI 수 범 사 례

1] 진압대원 직장훈련 프로그램(RightPerson) 개발 및 운영

□ 추진배경

- 직장훈련 총량목표제에 따라 구체적인 훈련 목표를 제시하여 현장활동 대원의 참여도 및 자율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인 현장활동 개선
- 현장활동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대사회 화재패턴에 대한 지식, 위기상황 시 대처능력 및 부족한 현장경험을 보완해 줄 진압대원 직장훈련 내용 정립 필요
- 직무 특성이 고려된 체력 프로그램 도입으로 개인체력 능력 확인 및 향상 유도
-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한 수준의 대시민 소방서비스 제공 필요

□ 진압대원 직장훈련 프로그램(RightPerson) 구성

구 분	내 용	항 목	영상지원
체 력	직무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종목	7	1종 2점
안 전	화재성상 이론 및 긴급조치 등 실기	15	5종18점
기 개 인	호스 말이·적재·전개, 방수기법 등	39	5종24점
술 팀워크	충수 후 전진, 팀워크 화재진압 기술 등	19	1종 5점

□ 세부추진 결과

- 라이트 퍼슨 체력 분야 평가
 - 추진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6월[정기(6월, 12월), 수시(신규 및 전입, 보직변경자)]
 - 횟수 및 참여인원 : 6회 / 577명[진압대원, 구조대원, 내근·구급대원(희망자)]
 - 복 장 : 방화복(상의), 공기호흡기·면체 착용
 - 평가기준 : 제한시간(6분 30초) 내 7개 종목 완료(Pass/Fail로 구분)

종목1	종목2	종목3	종목4	종목5	종목6	종목7*
계단 오르기	호스끌고 당기기(20m)	강제진입 (해머치기)	사다리 늘리기 및 줄이기	장비(40kg) 들고 걷기	인명구조 (더미끌기)	천장파괴 및 당기기
						
1회	1회	10회	1회	1회	1회	4회

○ 진압대원 직장훈련 프로그램(RightPerson) 교육 영상물 제작

- 개인(지식) Knowledge / 영상(5종 18점)
 - 위험징후 파악, 공기흐름의 이해, 밀폐진압 및 구획실 화재진압, 3D Fire Fighting 등
- 개인(기술) Technique / 영상(5종 24점)
 - 화재진압의 필요요소인 호스말이, 적재, 전개, 관창주수기법, 방수자세, RIT(비상호흡법)
- 팀워크(기술) Teamwork / 영상(1종 5점)
 - 2인, 4인으로 충수된 호스 화점 전진시 2번이상 꺾임이 있는곳 등 진압대장의 무전, 관창수, 관창보조1, 관창보조2의 역할 분담 훈련



□ 기대효과

- 인사이동 등 팀원 변경 시 공통적인 훈련 프로그램 및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빠르게 팀워크 확보 및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균형있는 능력을 갖춘 현장 활동 대원 확보
- 단순 반복적인 훈련에서 벗어나 청사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훈련 능력 향상 및 중부소방관서 관내 특성을 반영한 특화 훈련 추진
- 화재진압, 인명구조 현장에서 작업 수행능력 극대화를 통한 소방 전문가로서 구조대상자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등 소방서비스 질 향상

2 『쪽방화재 신속대응』을 위한
“한눈에 바로 찾는 스피드 안전맵” 제작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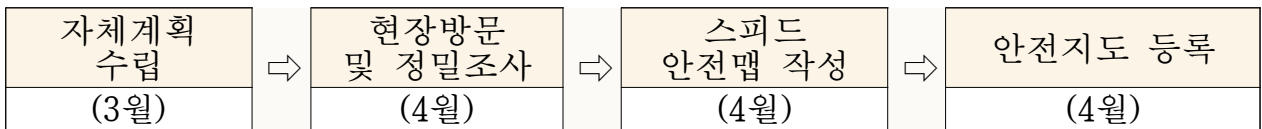
-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현장 중심의 대응전략 구현
-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생활안전 실천으로 대형화재 사전예방

□ 스피드 안전맵 제작 추진배경

- 건축물의 노후화·밀집화 등으로 급격한 연소확대 및 건물붕괴 우려
- 노약자·주취자등 임시 거주자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방화의식 결여됨

□ 스피드 안전맵 제작 개요

- 조사기간 : 2024. 3월 ~ 4월
- 추진대상 : 관내 쪽방 4개지역 32개동
- 추진경과



- 추진결과 : 지역별 쪽방을 한눈에 보고 바로 찾을 수 있는 스피드 안전맵 제작 완료(출동자령서의 주소만 보고 30초내 쪽방안지의 여부 바로 확인 가능/ 선제적 대응의 시작)

☞ 남대문경찰서·연세빌딩 뒤, 회현동·중림동 쪽방 32개동 ⇒ 안전지도 등록

□ 성과 및 기대효과

- 노후건물이 밀집한 쪽방지역에 대한 스피드 안전맵 제작으로 대형화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재난발생 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쪽방지역에 대한 집중안전관리로 화재대응능력 강화
- 재난발생에 대비한 맞춤형 소방훈련으로 효율적인 대처능력 향상

□ 관련자료

<p>소방안전지도 등록</p>	<p>쪽방 개별 지도 등록</p>	<p>쪽방목록 일괄관리</p>
------------------	--------------------	------------------